

# 국제위원회 규정

2016. 12. 28.

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

# 국제위원회 규정(안)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 정관 제 14조 제②항 제5호 및 제37조 제①항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국제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위원회는 국제스포츠 활동에 대한 장·단기 대책 수립과 국제(종합)대회 및 회의 국내유치 등 전반에 걸친 방향을 검토하여 협회의 국제사업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국제체조연맹(FIG) 및 아시아체조연맹(AGU) 등 국제체육기구 임·위원 입후보자 선발 및 관련 제반사항 업무
2. 국제(종합)대회 및 국제회의 등의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및 관련 제반사항 업무
3. 국제사업에 대한 협회 홍보 및 스포츠외교활동 등 제반사항 업무

##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
**제4조(조직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  2. 부위원장 1명
  3.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협회 사무처 중에서 1명을 지명하여 간사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
- ② 위원은 관련 전문가 및 협회 관계자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- ③ 협회 정관 제2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협회 정관 제37조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예외적으로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 할 수 있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④ 위원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해촉 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0조 제①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협회(시·도지부 및 연맹체 포함) 징계를 받았을 경우
6. 제7조 제④항에 해당되었을 경우
7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전무이사와 협의하여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제척 및 회피) ① 위원장이나 위원(부위원장을 포함한다)은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1.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입후보 후보자가 친족(「민법」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)인 경우

2.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3.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입후보 후보자는 위원장이나 위원(부위원장을 포함한다)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 또는 위원(부위원장을 포함한다)은 제①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, 제②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.

④ 제②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11조(협조요구) 시·도체조협회 및 연맹체는 국제(종합)대회 및 국제회의 등 국제사업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, 회의 참석 등의 협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심의절차) 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입후보 후보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지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①, ②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해당 국제연맹의 제출서류를 참고하되 별도의 심사(외국어 능력과 임·위원 활동경력 등)를 병행할 수 있다.

④ 제①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제체육기구 임·위원 입후보 신청서(별지 제1호)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지 제2호)
3. 이력서(국문, 영문)
4. 활동계획서
5. 소속(직장)장 추천서
6. 사진(여권용)

⑤ 제②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유치희망 지역의 해당 시·도체조협회 또는 연맹체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회개최계획서
2. 현지실사계획서
3. 각 시·도협회(연맹체) 및 필요시 소관지역의 단체장 이행보증서
4. 재정보증서

제13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 (2016. 12. 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